

## 공기호흡기 용기 등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소방위 구진영  
 ■ 확인자 : 소방경 이춘수

  
 이춘수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구로	산청	2011.09	ALT84154243	현장대응단 M15 2017.11.25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 / 부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 / 부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 / 부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 / 부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 / 부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 / 부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 / 부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 / 부)	

※ 점검자는 소방서별 지정 점검반원 / 확인자는 점검기관 해당 부서의 장(119안전센터장 등)

# 공기호흡기 용기 등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

소방위 구진영

■ 확인자 :

소방경 이춘수

*구진영*  
*이춘수*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구로	산청	2013.05	077KM082	현장대응단 M15 2017.11.25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적 / 부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적 / 부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적 / 부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적 / 부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적 / 부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적 / 부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적 / 부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적 / 부	

※ 점검자는 소방서별 지정 점검반원 / 확인자는 점검기관 해당 부서의 장(119안전센터장 등)

# 공기호흡기 용기 등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소방위 구진영  
 ■ 확인자 : 소방경 이춘수

*구진영*  
*이춘수*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구로	산청	2015.03	GF49679	현장대응단 M15 2017.11.25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✓ / 부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✓ / 부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✓ / 부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✓ / 부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✓ / 부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✓ / 부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✓ / 부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✓ / 부	

※ 점검자는 소방서별 지정 점검반원 / 확인자는 점검기관 해당 부서의 장(119안전센터장 등)

공기호흡기 용기 등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소방위 구진영  
 ■ 확인자 : 소방경 이춘수

*구진영*  
*이춘수*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구로	산청	2015.11	ALT84176410	현장대응단 M15 2017.11.25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✓ / 부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✓ / 부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✓ / 부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✓ / 부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✓ / 부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✓ / 부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✓ / 부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✓ / 부	

※ 점검자는 소방서별 지정 점검반원 / 확인자는 점검기관 해당 부서의 장(119안전센터장 등)

공기호흡기 용기 등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소방위 구진영  
 ■ 확인자 : 소방경 이춘수

구진영 (원)  
 이춘수 (원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구로	산청	2016.04	1612KM203	현장대응단 M15 2017.11.25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✓ (적 / 부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✓ (적 / 부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✓ (적 / 부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✓ (적 / 부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✓ (적 / 부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✓ (적 / 부)	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✓ (적 / 부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✓ (적 / 부)	

※ 점검자는 소방서별 지정 점검반원 / 확인자는 점검기관 해당 부서의 장(119안전센터장 등)